



대전 인권증진의 비전과 발전방향 연구

박 노 동
김 혁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김 혁 /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요약 및 정책제언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적인 인권담론의 영향으로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인권 실행의 주요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외계층의 증가, 삶의 양극화 등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 즉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인권도시를 구현할 타당성과 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UN 등 국제사회도 종전의 시민적·정치적 인권에서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이나 도시차원의 시민인권 향상과 실천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일본의 오사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이 인권도시를 선포하고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대전광역 시도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본 정책보고서는 대전시의 인권도시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대전이라는 도시단위에서 인권실천을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인권도시로서의 대전

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인권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인권동향과 국내의 인권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대전광역시의 인권도시 추진 여건을 역사·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 제도적 여건, 조직적 여건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 제4장에서는 인권정책의 비전설정과 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권도시 발전방향으로서 인권제도의 기반구축,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을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및 정책건의

- 대전시는 이미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인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 제도적 여건 및 조직적 여건은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역사·문화적 여건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충청의 고장인 대전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대전시민들 또한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이 강하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시민운동 참여의향이 높아 인권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정목

표 5가지 중 따듯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 행정은 인권이 지향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소통행정 구현, 나눔·성감·상생의 대전의 복지구현, 사회적 자본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인권도시 구현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제도적으로도 대전은 2012년 대전광역시 인권도시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인권관련 제도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조직적 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부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로파크, 대학의 인권관련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활동하고 있어 인권관련 업무 추진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대전의 기존의 도시이미지와 비전 등과 부합할 수 있는 대전의 인권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추진전략은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브랜드 제고,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인권도시 추진체계로는 인권업무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감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인권 단체 활동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관민 협력 위원회 결성이나 인권위원회 활성화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구축은 인권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인권제도의 기반은 인권행정 체계 강화 및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을 통한 인권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인권헌장이나 인권조례 등에 근거하여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또한 인권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의 확대,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인권도시 구현의 배경과 목적, 대전의 인권환경과 정책에 대한 평가, 해외 및 다른 인권도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전 인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인권정책 추진체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방안, 인권 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방안,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인권도시 대전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도시운영이나 시민의 삶 속에 인권이 내재화되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전략과 인권도시로서의 대전의 브랜드 정립을 통해 지구화시대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 목 차 -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5
제2장 인권의 의의와 국내의 동향	9
제1절 인권의 의의	9
제2절 국제사회의 인권동향	14
제3절 국내의 인권동향	24
제4절 인권동향과 향후 과제	39
제3장 대전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도시 추진 여건	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의 중요성	45
제2절 대전 인권도시 추진 여건	47
제4장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	63
제1절 인권 정책의 비전	63
제2절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추진 전략	65
제3절 대전 인권 도시 발전 방향	73
제4절 바람직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115
제5장 결론	125
참 고 문 헌	129

- 표 목 차 -

<표 1> 세계 주요 인권 연표	18
<표 2> 인권도시 광주의 구성	35
<표 3> 서울시 인권정책의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38
<표 4> 대전시민의 사회적 포용력	49
<표 5>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증가율	52
<표 6> 2011년 자원봉사자 현황	52
<표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58
<표 8> 2012년 장애인 등록현황	86
<표 9>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90
<표 10> 2012년 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 현황	90
<표 11> 결혼 이민자의 인권강화 핵심추진 과제	97
<표 12> 대전 여성가구주 현황	99
<표 13> 2010년 대전시 아동 청소년 인구	101
<표 14> 2011년 학업중단율	103
<표 15> 노인학대 유형	105
<표 16> 노인학대 주된 행위자	106
<표 17> 독거노인 현황 추계	107
<표 18> 2012년 대전시 범죄발생 현황	110

- 그림 목 차 -

<그림 1> 광주 인권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체계도	36
------------------------------------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 2차 세계대전 이후 일기 시작한 세계 수준의 인권 실행 체계의 확립을 위한 인권담론은 지난 수십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여러 형태의 인권선언이나 인권협약 등 국제 인권법이 만들어지고,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의 발족에 이르기 까지 인권 실행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인권 레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세계의 조류에 맞춰 국내의 인권상황도 괄목할 만큼 개선됨. 즉 식민지 지배, 분단과 한국전쟁, 권위주의 정부 통치와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상황이 지속되어 왔지만, 지난 20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각 분야의 인권 상황이 빠르게 개선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기관이 설립되고, 인권관련 기관의 업무 집행이 개선되며,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성격의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인권의 실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발전
-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가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인권 보호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함
- 시민적 · 정치적 차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여러 차원에서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보호 체

계를 도입되었지만 인권 침해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 생명위협,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 폭력에 노출된 경우나 인종, 종교, 신분, 성, 나이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 침해가 갖가지 형태로 헤아릴 수 없이 발생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각국의 노력이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인권 실행의 주요한 현장인 지역 공동체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함
-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경쟁체계와 물질우선주의로 인해 야기된 소외계층의 증가, 삶의 양극화 등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운영 모델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발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과 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시민생활 속에서 인권존중의 실천이나 제도 등이 타 도시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가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현실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대전만의 인권도시 비전과 실질적인 실천 전략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인권도시로서의 대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 인권도시 대전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도시운영이나 시민의 삶 속에 인권

이 내재화되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전략과 인권도시로서의 대전의 브랜드 정립을 통해 지구화시대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인권도시로서의 대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인권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인권동향과 국내의 인권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권의 과제를 제시
 -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대전광역시의 인권도시 추진 여건을 역사·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 제도적 여건, 조직적 여건의 측면에서 고찰
 - 제4장에서는 인권정책의 비전설정과 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권도시 발전방향으로서 인권제도의 기반구축,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을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설계
 -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연구수행 방법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조사에 의존하여 수행함
 -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의 최근 동향 도출
 - 사회적 자본 확충, 복지만두레 등 기존 정책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인권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
 - 대전의 주요 인권관련 정책을 고려한 인권증진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 실행 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철학, 상위 비전의 관점에 대한 자료 및 문헌 검토

제 2 장

인권의 의의와 국내외 동향

제1절 인권의 의의

제2절 국제사회의 인권동향

제3절 국내 인권동향

제4절 인권동향과 향후과제

제2장 인권의 의의와 국내외 동향

제1절 인권의 의의

1. 인권의 개념

- 인권의 개념은 역사의 소산이고 문명의 산물로 특정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발전
 - 인권의 개념은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이 대두된 17·18세기의 개인주의사상, 평등사상, 과학정신의 발달,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 등의 영향으로 체계적으로 정립
-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와 보호장치가 필요
 - 인권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사회의 문화, 관습,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도 인권에 대한 개념을 최고법인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
 - 인권은 최고법인 헌법상의 용어로 헌법 제10조에서 ‘기본인권 보장’과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
 -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 헌법 제10조 유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 규정

- 그러나 인권은 보편주의적 개념으로 법과 제도, 국가주권을 초월한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법적 개념을 초월하여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인권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의미함
 - 인권은 사람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각 개인에게 부여된 일련의 권리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 등 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
 - 세계동포주의적 개념으로서 세계인 모두가 누려야 할 가치로서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을 의미

2. 인권의 특성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적 전제인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도덕성, 우선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보유함
- 인권은 보편적 주체성이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
 - 부나 권력, 인종이나 성별,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 시민적·정치적, 경제적·사회적, 집단적·연대적 인권의 목록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각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는 불가분성의 원칙과 그 실현을 위하여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의존성이 인권의 특성

- 예로 생명권과 의식주의 권리는 서로 떼어내지 못하는 유기체적인 권리
- 1993년 비엔나 선언도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 특성을 확인
- 인권은 그 구속력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이라는 특성을 보유
 - 인권은 다른 어디도 아닌 인간성 자체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
 -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권리이며, 인간성 자체가 인간 특유의 도덕적 보성인 만큼 이 권리는 인간인 이상 누구나 필수적으로 갖는 도덕적 권리에 해당
- 인권의 도덕성과 제도 초월성으로 인하여 인권은 실정법에 대한 우선권을 갖음. 즉 인권은 제도적 권리 및 실정법적 권리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음
 - 실정법적 권리가 인권 형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실정법적 권리의 내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인권은 우선성을 갖음

3. 인권 개념의 변천

-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특정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이 반영되면서 역사적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변천. 즉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으로 그 내용이 변천되어 설명되어 지고 있음
 - 인권의 개념이 ‘탄압 패러다임’ 에서 ‘웰빙 패러다임’ 으로 변화
 - 국가의 부당한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한 대항의 개념으로써 인권 개념이 고안되어 인간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려는 개념으로 발전

- 탄압 패러다임의 인권은 국가가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충족시키면 되었으나 웰빙 패러다임의 인권은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확대

○ 제1세대 인권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
- 국가의 소극적인 불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로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
- 생명권,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정치활동을 할 권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 등이 해당

○ 제2세대 인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
-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로 ‘...에 대한 권리’로 표현
- 노동권,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등이 해당

○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

-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로 인민의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
-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서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처분권, 발전권, 평화·안전권, 환경권 등 제3세대 인권을 명문으로 규정

-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나 각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는 권리
- 제1세대와 제2세대 인권은 법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하여 실현됨에 반해 제3세대 인권은 사회동반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단성을 띠며 권리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요구
- 발전권, 환경권(건강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 깨끗한 물을 요구할 권리, 깨끗한 공기를 요구할 권리 등),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해당

제2절 국제사회의 인권동향

1. 인권의 역사적 발전

○ 마그나카르타

- 1215년 영국의 군주와 귀족계급 간의 약정서로서 성문으로 된 권리보장의 시초

○ 미국과 프랑스 인권선언 등 근대시민헌법을 통한 인권보장

-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시민혁명
- 인권의 목적성과 권력의 수단성, 인권의 불가침성,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을 규정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평균수명의 저하 등 19세기 비인간적 생활 상태로 그로 인한 계급투쟁의 결과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
- 19세기 후반 1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이념의 등장으로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명시
- 평등권의 확대, 여성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두고 전개

○ 국제연맹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창설되나 국제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 1919년에 설립된 국제연맹의 전문기구로 강제노동협약 체결 등 200개 이상의 노동협약 채택, 180개 이상의 권고안 마련
-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위가 강제노동 금지협약 위반이라는 견해 제시 등 아동매매,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으로 활동 범위 확대
- 1990년 국제반노예기구로 이름을 바꾸는 등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활발히 활동

○ 세계인권선언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권의 절대성이 약화되는 대신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주창한 최초의 포괄적 인권문서로 전문과 개별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문 30개조로 구성
-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닌 결의문으로 법적 효력은 없고 도덕적 구속력만을 갖는다는 일반적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 1966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는 일반조항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을 채택하고 자유권규약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1966년)’ 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1989년)’ 를 첨부
- 우리나라 발효일은 1990년 7월 10일. 단 제2선택의정서는 미가입
-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제1세대 인권,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인 제2세대 인권 외에 박애를 이념으로 하는 연대권이 제3세대 인권으로 등장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 1965년 체결, 우리나라 발효일은 1979년 1월 4일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년 체결, 우리나라 발효일은 1985년 1월 26일

-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 남편과 아내로서 동일한 권리를 규정한 협약 제16조는 유보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 1984년 체결, 우리나라 발효일 1995년 2월 8일. 단 선택의정서 미가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89년 체결, 우리나라 발효일은 1991년 12월 20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 1990년 체결, 우리나라 미가입

- 미등록 입국 및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공통되는 권리를 보호

○ 비엔나 인권선언

- 1993년 171개국 정부대표와 유엔 산하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세계 인권회의에서 결의

- 전문과 39항으로 이루어진 비엔나 선언과 6개 분야 100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계획을 채택
-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고 관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며 동등한 양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체결, 우리나라 발효일 2009년 1월 10일
-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 1990년대 이후 보스니아와 르완다의 집단살해를 계기로 2002년 설립
 - 2004년 로마 협정의 결과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임기 9년의 판사 18인으로 구성
 - 집단학살,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처리
 - 이라크, 소말리아, 아이티, 수단 등의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에 개입
-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은 대체로 인권규약에 가입하지 않는 점, 국가들이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부인하는 점, 스스로 비준한 인권규약을 지키지 않거나 국내법화하지 않는 점, 국가들과 사회적 인권 감수성 내지 인권 인식도가 낮다는 점, 인권침해 주체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그 이행에 본질적 한계가 존재

<표 1> 세계 주요 인권 연표

년 도	인 권 관 련 내 용	비 고
1215	영국 마그나 카르타	
1679	영국 인신보호령	
1776	미국 독립선언	
1789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	
1791	미국 권리장전	
1919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45	유엔 헌장	
1945-47	뉘른베르크·도쿄 전범재판	
1948	세계인권선언	
1951	난민협약	
1965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9	인종차별철폐협약	
1975	헬싱키 협정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1984	고문방지협약	
1989	아동권리협약	
1990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8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협약 체결	
2002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2006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2.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체제

- 유엔헌장은 인권보호에 관한 주요 권한을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부여
- 경제이사회에는 인권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하부기구로 두고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총회 산하로 옮겨 인권이사회로 격상되고 인권소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설치
- 인권기구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두어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
 -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 보장 및 장려,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인권분야에 대한 권고, 기술·재정적 원조제공, 인권교육 증진 및 인권침해 상황방지, 인권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와의 대화시도, 인권의 보장과 장려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유엔 시스템 내의 인권 관련 활동의 활성화 및 조정, 인권보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엔기구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처리
- 그 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헌장의 해석 적용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의 상당한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한 강제조치를 담당

3. 인권도시의 등장과 발전 사례

1) 인권도시의 등장

- UN 등 국제 사회도 기존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
- 각 도시와 지방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 인권도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된 삶의 환경에서 지방정부, 국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의해 인권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접근 방법

으로 사고됨

- 국제 시민사회 역시 인권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운동과 인권 관련 NGO 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개념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인권도시란 인권주체의 참여속에서 인권가치의 구현을 도시 운영에서 가장 핵심으로 추구하고, 인권의 틀을 통해 시민의 삶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 또는 도시로 정의하거나 시민 참여와 공공기관의 법제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시공동체 삶의 중심 가치이자 규범적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도시 또는 지역공동체라고 정의
- 인권도시 실천운동은 1989년 설립된 인권 관련 국제 NPO인 인권교육민중연합(PDHRE)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 단체는 인권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및 재구성을 이념적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PDHR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1997년 처음으로 인권도시로 선포된 이래, 2010년 기준으로 29개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되었고, 아시아에는 인도의 Nagpur, 필리핀의 Bucuy Municipality, 대만의 Kaohsiung 등 세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됨

2)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사례

- PDHRE의 라틴아메리카 본부(1995)로 1997년 로사리오 시 여성부 자문위원회의 특별 세션에서 100여 명의 시민 대표자들과 시 공무원들이 모여 로사리오의 인권공동체 수립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
- 1999년 포드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 경찰학교, 지역 인권비서, 움부즈만 사무실 등 12개 조직과 여러 개인이 참여해 인권도시조직

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아래 지역 전체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 경찰과 함께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무모한 경찰 발포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시켰고, 경찰학교는 인권을 상설 교과과정으로 편성
- 2001년에는 인권단체·국회의원·교원단체대표 등이 학교에서 인권교육 필수화를 규정한 지방법을 제정하였고, 시에 속한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인권조약을 만들기도 했음
- 자치단체에 ‘인권장관실’을 두어 공공영역의 안전 및 불차별의 원칙을 촉진

3) 오스트리아 그라츠 사례

- 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남부의 인구 27만 명의 문화도시로 유럽 최초의 인권도시로 공표되었고, 2001년 시의회는 인권도시 선언을 통해 그라츠를 인권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그라츠 대학과 협력으로 유럽훈련 인권 민주주의 연구센터(ETC)가 개설하고 인권, 민주, 법적 조항에 관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의식을 고취
- 2002년 그라츠 인권상황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우선 순위별로 행동계획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이주자, 노인 등 여섯 가지 분야의 인권문제 목록을 작성해 실천함
- 2005년에는 그라츠 사형제 폐지 선언이 있었고, ETC의 훈련프로그램은 인권 교육 세미나와 워크숍 조직을 활용해 다른 인권도시들을 지원
- 인권도시로 지정된 이래로 지금도 시정부, 국회, 시민들이 인권도시 건설과 도시에서의 인권적 삶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들을 논의

하고 있음

- 대표성을 지닌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실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시장이나 시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 그라츠는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디자인 분야로 가입한 창의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와 시민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음
 - 특히 ETC는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연계하는 인권문화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 중 ‘인권 산책’은 도시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갖도록 함
- 도시 주변의 산책 및 조깅 코스에 ‘인권 트레일’을 만들고,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30개 가로등 기둥의 명판에 새겨 행인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함

4) 일본 오사카 사례

- 인권도시는 도시차원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단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인권 선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수준이 취약했던 일본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1980년대 오사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09년 10월 현재 일본의 지자체 1,835곳 가운데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인 곳은 399곳(21.7%)으로, 지자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은 인권조례를 토대로 인권 관련 행정을 펼치고 있음

- 오사카는 산하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권 개선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部) 산하 인권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인권에서 대표적인 인권도시로 부상하고 있음
- 오사카부에 속한 사카이시는 인권도시를 주요 정책적 목표로 삼고, 1980년 ‘인권옹호 도시선언’ 이후 2005년에는 ‘사카이시 인권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시책 추진본부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가꾸기 조례’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제3절 국내의 인권동향

1. 국가인권위원회

○ 설립과정

-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 논의
-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공약
-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 발족 및 활동
- 200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 임시회 통과
-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 및 11월 25일 시행
-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출범

○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독립기구,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준외교기관), 인권교육·홍보·조사연구기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기능,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을 주요 기능으로 활동

- 정책권고기능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교육·홍보기능 : 인권관련 교육 수행 및 인권문화 확산
- 조사·구제기능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 국내외 협력기능 :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 인권위원회의 활동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인권정책 의견표명 및 권고 총 450건, 인권상담 166,575건, 민원 및 안내 232,410건, 총 578,091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진정 접수 및 처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의 경우 9,582건을 접수하여 9,587건을 처리. 또한 권고의 경우 권고수용률은 87.6%임

- 주요 활동 사례

분야	주요 내용	비고
인권정책권고의견표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인권정책과 법제 인프라 구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파공작원과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권고 ·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생 관련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차별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 헌법재판소 호주제 폐지 의견 제출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표명 · 학생두발제한 개선 정책 권고 ·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 공무원 정년 차별에 대한 권고 ·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채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 · 공공부분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권고 ·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권고 - 시민적 권리와 형사사법제도 등 자유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 사형제 폐지 권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일명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 확인 등 사건(일명 불온서적 사건)의견 제출 ·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 권고 · 간접제벌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 형법 총칙 전부개정 관련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 ·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권고 ·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규정 개선 의견표명 ·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 ·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법령 및 정책권고 - 국제인권협약 국내 이행 관련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 미가입 협약 가입 권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및 국가예방기구 관련 의견 표명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 정보인권 관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의견표명 · 공공기관의 방법 CCTV 설치 운영 관련 정책권고 · 시험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 국내 공항 전신검색장치 설치 금지 권고 ·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 기타 ·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표명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 표명 · 초중고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수정 권고 ·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 권고 · 북한인권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등 	
<p>조사구 제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과 경찰분야 · 불심검문, 강제입의동행, 심야조사 등 수사관행 개선과 적법절차 준수 권고 · 구속시설 통지, 변호인 접견권 등 보장권고 · 위장폐일 발송 등 불법 수사에 대한 개선 권고 ·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경찰서 고문사건 고발 및 수사의뢰 · 여의도 농민시위 사건, 촛불집회 사건 등 과잉진압 관련 개선 권고 ·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개선 권고 ·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 등 - 군대 전·의경 분야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군영창관리규정 개정권고, 교도소 시설 및 처우 관련 규정 개선 권고 	<p>인 권 침 해 분 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 훈련소 가혹행위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재발방지 등 권고 · 군복무중 농약살포작업 등 사례 없도록 확인 감독 권고 · 군복무 부적용 병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전·의견 구타 가혹행위 관련, 전·의견 제도 폐지 권고 등 - 구급시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알권리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징벌·계구제도 개선 권고 · 소거실 등 수용환경 개선 권고 · 교도소 징벌형의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수용자 호송시 시승, 시감 상태 노출 관련 개선 권고 등 -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계속입원, 퇴원심사 관련 인권침해 개선 권고 · 시설 생활인에 대한 강박 등 가혹행위 개선 권고 · 아동양육시설장의 폭언, 폭행 등 아동학대 관련 검찰 고발 및 지도감독 권고 · 광주 특수학교 시설 성폭행 사건 검찰 고발과 재발방지 대책 권고 등 -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법규정 개성 등 권고 · 미등록 이주민 과잉단속 개선 권고 · 출입국사무소 소방 등 안전 조치 강구 등 권고 · 보호소 내 유아 의료조치 미흡 등 개선 권고 · 교복명찰 부착으로 인한 신상 노출에 따른 개선 권고 · 일제고사 반대 학생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 · 법적 근거 없는 지문날인 관행 개선 권고 · 적법절차를 위반한 국가기관 출입금지에 대한 개선 권고 · 판사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시정 권고 · 코미디언 공채 시 응시연령 제한 시정 권고 등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시정권고 ·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보험가입 제한 시정권고 · 비학생 청소년 공공시설 할인 제한 시정권고 ·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학칙 시정권고 ·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 시정권고 · 골프장 경기보조인 나이차별 관련 시정권고 	차 별 행 위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임호봉 산정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 불인정 시정권고 ·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거부 시정권고 등 -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염보균자 불합격 처리에 대한 시정권고 등 -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계부모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 시정권고 등 -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서의 차별 시정권고 ·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 등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 채용시 남녀차별 시정권고 ·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차별 시정권고 · 서울 YMCA 여성회원 참정권 제한 시정권고 · 초등학생 번호부여 남녀차별 시정권고 ·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시 성별에 따른 차별 시정권고 -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전환자 성별 변경지침의 차별 시정권고 · 동성애자 헌혈 문진 과정에서의 차별 시정권고 - 용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키, 몸무게 제한에 대한 차별 시정권고 · 과체중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시정권고 ·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시정권고 -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침해 시정권고 - 가족행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시정권고 -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조회를 통해 드러난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임용취소 시정권고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대학교수 지원자격 제한 시정권고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전화가입 제한 시정권고 -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신규직원 모집시 4년제 대학 졸업자 제한 시정권고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시험과 학교 통학버스 이용 시 장애에 의한 차별 시정 권고 ·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공 제도 개선권고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시정권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시정권고 - 성희롱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교육홍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경·교도관 등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및 인권교육센터 설치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 초·중·고교용 등 각종 인권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선 1318’ 등 인권 영화 및 ‘별별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인권 잡지 발행, 블로그 운영, 뉴스레터 ‘휴먼레터’ 서비스 · 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 · 인권포스터 제작 등 인권문화 콘텐츠 보급 · 인권보도준칙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 독립성 강화 및 인권관계법령 정비 등 인권증진을 위한 해결 과제를 갖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장의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및 전원 상임위원회화
 - 예산 및 부처 운영의 독립성 강화
 - 북한인권법, 인권교육법 등의 국내법과 국제연합인권이사회의 등의 권고를 국내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동향

1) 일반적 인권동향

- 국내에서 인권도시의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도시 이미지 정착, 도시공동체 건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권도

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함

- 진주시는 1920년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와 신분해방을 위해 결성된 ‘형평사(衡平社)’가 주도한 형평운동을 지역의 상징적인 인권운동의 역사로 간주하고, 2001년 진주인권회의를 조직해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한 실천을 전개
 - 진주시는 2005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진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인권도시 진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후 진주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운동을 전개
 -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정치, 사회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의 권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권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권 존중의 가치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일이 인권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기로 선언한다” (선언문 일부 발췌)
- 거창군 시민사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기억을 가지고 거창군을 평화·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 거창평화인권예술제 등 문화적 재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인 학살 관련자의 이해가 통합되지 않아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많은 도시에서 학생, 장애인, 다문화 및 이민자 등 인권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인권조례 제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단위 시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필두로 경상남도과 전라북도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제정 움직임은 각 기초자치단체로 파급되어 가고 있음

2) 광주광역시 인권동향

- 1993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국가적 차원의 5·18 기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시민연대)’을 결성해 5·18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광주를 인권도시로 상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함
- 광주에서 인권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 광주시가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에서 시작됨
 - 이 보고서는 광주의 미래도시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권·평화도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였고, 광주를 인권과 평화운동의 중심지로 거듭날 필요성을 강조
 - 이 보고서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도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주요 원리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문화광주’를 지지해 주는 하위적인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결적인 인권도시 플랜이라는 볼 수 없음
- 2003년 작성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종합기본계획』은 인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를 광주라는 도시에서 포괄적으로 실현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음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종합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종합기본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숭고한 인권 이념이 구현되는 도시 - 국제적인 민주·인권·평화 문화도시의 중심지 -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이 살아있는 도시 - 민주·인권·평화 정신이 지역공동체에 내재화된 도시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1: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 학습시스템 구축 - 전략2: 민주·인권·평화 관련 광주의 국제성 증진 위한 기반 구축

	-전략3: 5·18기념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략4: 민주·인권·평화 관련 공간·시설의 목적성 강화 및 운영활성화 -전략5: 민주적 참여행정, 민관협력 시스템의 설계
--	---

- 광주시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념사업, 국제교류사업, 문화사업, 학술교류사업 등이 전개
 -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2006)
 - 세계여성평화포럼, 광주국제평화포럼(2007) 등
- ‘인권도시 광주’의 의미를 상징화하고 관련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지속됨
 - 2005년을 전후로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조례 제정
 - 2005년 지역인권행정의 거점으로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 2007년 인권기본조례인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조례(2009.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2. 전부개정)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사이의 인권증진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0. 8.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인권전담 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도시행정 차원에서 인권을 비중 있는 고유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함
 - 정책팀, 교류팀, 옴부즈맨팀, 5·18선양팀 등 4개팀, 19명
- 2011년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 비전 :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는 ‘참여 공동체’, ‘돌봄 공동체’, ‘연대 공동체’ 를 지향함으로써 전체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료화될 수 있도록 함

- 참여 공동체는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를, 돌봄 공동체는 ‘삶이 안정된 인권도시’ 를, 연대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인권도시’ 를 지향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들이 실체화되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2012. 5. 광주인권헌장 제정

-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광주공동체의 인권구현으로 위한 시민적 합의로 만든 실천규범

- 2012. 5. 21. 제47회 시민의 날 시민대표 21명에 의하여 선포

○ 인권지표 개발

- 2012. 5. 21.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선정

5대 영역	18대 실천 과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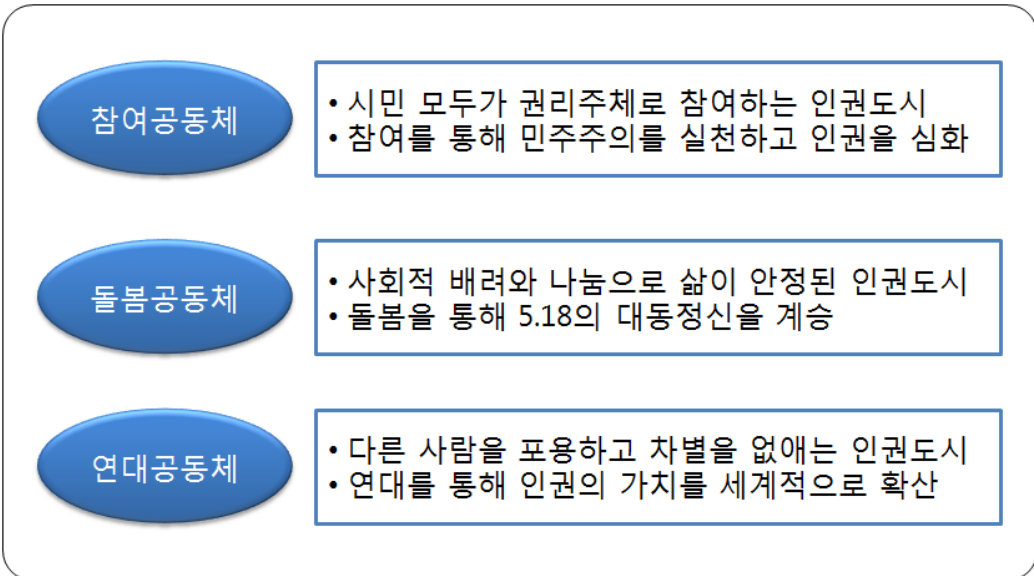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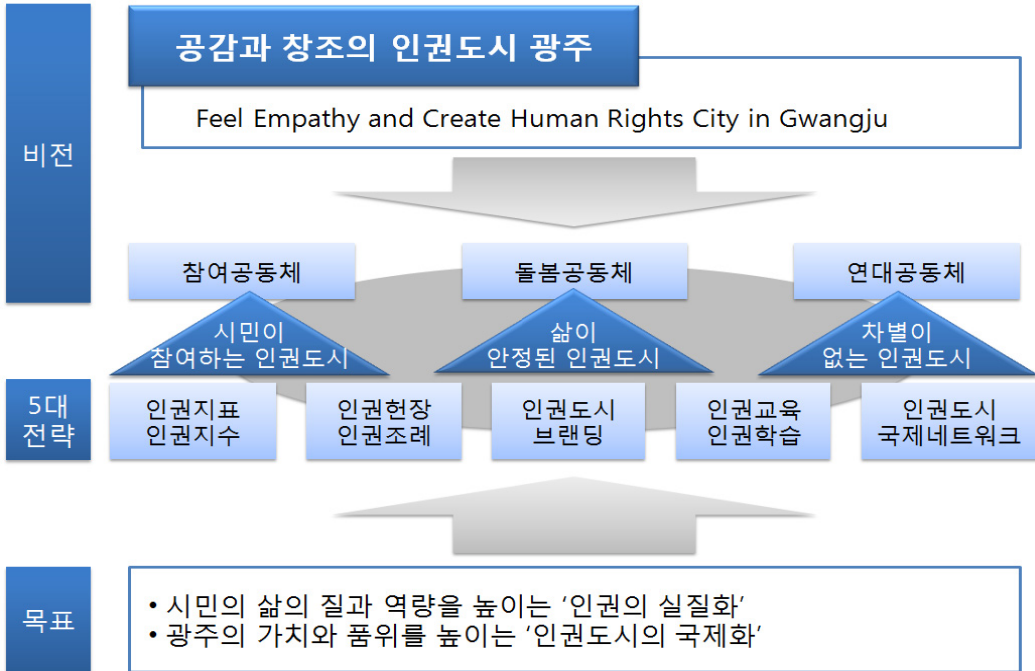
<p>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p>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 할 권리 보장 -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 범죄·교통사고·재해·화재·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p>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 인권도시 광주의 개념, 추진체계, 작동원리, 작동방식, 실천영역, 주요가치, 실천조직, 목표 및 제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으며, 추진 비전과 전략 체계도는 <그림 1>과 같음

<표 2> 인권도시 광주의 구성

구성영역	주요 내용
개념	- 광주만의 고유한 인권 역사를 갖고 인권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도시
추진체계	- 광주시·지역시민사회 참여의 포괄적 인권 거버넌스와 국가의 지원이 결합
작동원리	- 참여·나눔·연대를 중시하는 실천, 합리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창조적 문화활동
작동방식	- 인권시스템과 도시작동원리로 정착하기 위한 시민정치운동과 행정의 협력
실천영역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향상, 인권의 제도화 장치 마련
주요가치	-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 평화, 자유, 정의, 평등, 연대, 사랑, 공감, 공존 등
실천조직	- 민주시민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력과 실천력 확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실질화: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복지의 실현, 삶의 질 개선으로 활력 있는 시민사회 - 인권도시의 국제화: 인권의제를 생산하고 공동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인권을 전파하는 매개 도시
제도	- 인권의 주요 강령과 세부실천 항목을 담은 인권헌장, 인권조례 제정

<그림 1> 광주 인권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체계도



3) 서울특별시 인권동향

- 서울시는 서울 시민 권리선언과(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통하여 ‘서울시 인권·권리 증진 조례 제정’ 및 ‘서울시민 인권·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권리현장 제정’의 추진을 제시
-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2012년 9월 28일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인권담당관 신설
 -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교육, 인권현장 제정·공포, 인권 관련 실태조사,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교육·홍보,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인권지수 연구·개발 등 인권행정 총괄
- 2013년 1월부터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및 운영
 - 시간제 지방계약직 공무원 3명으로 시 지도감독 기관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시 정책 개선 권고
- 2013년 7월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제정
- 서울특별시의 인권정책의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표 3>과 같음

〈표 3〉 서울시 인권정책의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정책 목표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구축
중점 과제	장애인	어르신	도시	공무원	인권행정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 제거 · 탈시설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이 말한 권리 확대 · 홀로 사는 어르신 삶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행정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참여하는 권행정 운영
	이주민	성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체계 마련 · 의료 건강권·사회서비스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차별 해소 				
	여성	어린이·청소년	주거	시민	일반행정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 보장 사회 조성 · 학교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문화 조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노동	새터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조성 · 노동기본권이 보장받는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지원 · 문화소외시민 · 문화소외 시민배려 					

제4절 인권동향과 향후 과제

1. 우리나라의 인권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 냉전체제 종식과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성, 경제발전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노동 및 시민사회 참여역량의 강화로 정치적, 경제적 권리 신장 등의 인권환경이 크게 개선
 -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의 정치적 자유 및 권리 신장
 - 인권침해 관련 법 폐지 및 개정, 인권증진법 제정, 관련 국가기구 설립
- 국제적 환경도 냉전체제 종식과 남북관계 화해 모드 조성
 -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관계 평화 모드에 의해 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화
- 그러나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의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 및 차별이 발생하여, 생활 속의 인권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인권침해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인권침해, 사생활 노출 등 새로운 문제 발생
- 노동 및 시민사회 운동역량의 강화로 정치적, 경제적 권리 신장
 - 노동조합 결성, NGO 등 시민사회운동 조직결성과 운동역량 강화
- 분단국가이며 국가주의, 수직적 사회구조 등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권이 제약받아 왔으나 현재는 민주화, 신자유주의 경제화, 노동환경 유연화, 개방적 사회화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새로운 인권의 핵심과제로 등장

-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이주노동자 증가, 다문화 사회, 여성문제, 새터민 증가,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증가
- 따라서 정치적 자유권 측면에서는 시민참여,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차별해소,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주거, 일조건, 교통, 소음 등)에서 인권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

2. 현대사회의 인권보장 과제

- 과학기술의 진보, 의료기술의 발달, 교통과 정보통신, 매스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간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의 보장과 함께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생존권과 복지보장은 여전히 전 세계적 과제로 남아 있으며 남녀평등의 실현, 장애인의 인권보장도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
-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물질적 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정보통신의 감시와 규율의 대상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인간성의 훼손과 왜소화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수호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인 국제교류의 확대 및 인적 교류의 증대에 따른 많은 외국인 유입,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인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이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사회적 통합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등이 새로운 과제를 부각
-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인권의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박탈과 억압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 및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등으로 확대 전환되어 가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인권의 개념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문제가 인권의 영역

으로 들어오는 통합적 인권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UN에서도 인권에 대한 정책이 차별과 관련된 생활 속의 인권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 인권의식의 향상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전이라는 도시단위에서의 인권실천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

제 3 장

대전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도시 추진 여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의 중요성

제2절 대전 인권도시 추진 여건

제3장 대전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도시 추진 여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의 중요성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

-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지방자치는 단위 투표율과 소수에 의한 전제의 가능성, 지역적 이익의 과도한 중시로 인한 배타주의의 가능성, 지역의 토호세력·지방정치세력·지역언론 등의 유착관계 형성 등으로 지방자치가 반드시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유지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다양한 형태의 규율과 질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은 오랜 기간과 공통 경험을 통하여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삶의 세계를 공유하며 동질적인 관습과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질성과 응집력은 구성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
 -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고 차별과 억압을 일상화
- 또한 질서 유지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권보호와 증진노력에 긴장을 야기하여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을 보유

-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관행은 경우에 따라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정신과 충돌하기도 함
 - 직장 생활의 관행은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묵인하며, 가장양육 방식으로 인식되어온 매질은 학대나 가정폭력의 인권문제를 야기
 - 여성을 업신여기는 공동체의 관습은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야기
 - 학교 교사의 권위로 인식되어온 훈육 방식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보유
- 오랜 역사와 경험에 기초한 전통, 관습,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은 새로운 인권 영역을 확장하며 인권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음
 - 오랜 기간의 경험과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관습이나 문화는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질서에 복종을 강요하며 인권 침해를 정당화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습이나 문화, 제도에 인권침해 요소가 만연되어 있고 인권 실행을 방해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올바른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의 중요성

-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 항상 요구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일하고, 생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문제가 생겨나고 또 보호하여야 할 현장이며, 국제 사회가 약속한 인권 선언이나 협약, 또한 국가가 정한 인권 내용이 실행되어야 하는 현장
 - 인권의 구체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점은 개인이 속한 주변환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삶의 공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문제를 철저히 이해

하여야만 인권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

-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실행을 감시하거나 증진하는데 효과적
 -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와 증진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 동질성과 응집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특징인 ‘지역 연고주의’와 ‘가족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주자를 거부하고 차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인권의 가치를 도입하여 이해하면 지역 연고주의나 가족주의로 규정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이웃에 대한 관심은 구성원들이 인권문화나 인권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기여하여 인권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
-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한다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은 그 지역의 인권 실행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권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를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후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확보의 측면에 치우쳐 있으나, 이제는 추상적 소극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 적극적으로 인권은 삶의 현장에서 인권주체의 참여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이 중요

제2절 대전 인권도시 추진 여건

1. 인권업무 추진상황

- 2012. 11. 02.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
- 2013. 02. 22. :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근거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7조 및 제8조
 - 구성 : 13명(당연직 1, 위촉직 12) / 임기 2년
 - 기능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인권 관련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
- 2013. 09. 06. :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 공동 개최(인권위, 충대)
- 2013. 11. 11. : 인권정책 관련, 대전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의뢰
 - 대전 인권증진 비전과 발전방향 연구(인권도시 잠재력과 가능성)
- 2013. 12. 04. : 충대 인권센터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자치행정과장) / 여
론 수렴
 -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에 대한 학술세미나

2. 추진 여건 분석

1) 역사문화적 여건

- 대전은 선사시대로부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충절의 고장으로서 수려한 자연
환경과 문화 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로 인권친화적 도시라 평가
할 수 있음
 - 1176년 천민들의 집단거주지인 명학소(지금의 탄방동 부근)에서 천민 망이와
망소이의 신분해방을 위한 반란이나

- 1960년 3월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의 단초를 제공하는 3.8 민주운동 등 대전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함
 - 또한 산자수려하고 재난이 거의 없는 자연적 환경으로 대전 사람들은 순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인권도시 구현의 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세종시와 함께 중앙 정부기능이 60% 이상 집적되는 제2의 수도권 형성, 교육·군수사령부, 3군 대학 등이 위치한 국방의 중추도시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도시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사회적 약자를 ‘나의 이웃’ 으로 포용하는 경우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 2012년 조사결과 대전시민들은 장애인, 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이웃과 직장 동료가 되는 것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
 - 반면 전과자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대전시민의 사회적 포용력

(단위 : %)

구 분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 들일 수 없음
장애인	1.9	23.0	26.0	46.2	2.9
결혼가정의 자녀	4.0	24.2	28.0	41.3	2.6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1.3	12.5	30.2	48.6	7.3
전과자	0.3	1.6	5.4	21.3	71.5
동성애자	0.1	3.1	7.1	28.4	61.3
북한이탈주민	1.2	8.8	20.3	54.6	15.1

자료 : 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 또한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시민운동 참여의향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인권도시를 지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 2012년 조사 결과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은 긍정(60.8%)이 부정(5.0%)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지난해 대비 긍정은 13.8%p 상승하고
 - 시민 10명 중 4명(38.1%)가 시민운동단체 참여 의향을 보이며
 - 50.6%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

2) 정책적 여건

- 대전은 민선 5기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 의 3대 시정 방향과 ‘첨단경계도시’, ‘교육·문화 레저 특별시’, ‘따듯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행정’ 을 5대 시정목표로 하고 있음
- 대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시민중심 공감·소통행정 구현, 나눔·성감·상생의 대전형 복지구현, 사회적 자본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인권과 결합하여 시행한다면 인권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어 인권도시 대전을 구현할 수 있음
- 시민 중심의 공감·소통행정 구현
 - 시정의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도입
 - 시민과 대화하는 금요민원실,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정책실명제 강화,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유지

- 매월 26일 ‘이웃의 날’ 지정, 한 달에 한 번 이웃 찾아보기 운동 전개

○ 나눔·성김·상생의 대전형 복지구현

- 대전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의 민간화, 통합화, 전문화 추진
- 83개 조직, 2천 8백명의 회원, 1,211기관·단체(18,142명)이 참여하는 복지만두레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결연 확대(12,000가구)
-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희망키움 통장 등 차상위 계층 중심의 탈빈곤 정책 강화
- 노인일자리(12,774개)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행복한 우리 복지관, 장애인 평생교육원, 장애인전문재활병원 건립, 건강카페 확산 등의 사업 추진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무상급식 실시, 취약지역 교육여건 개선, 학교폭력 근절 협조체계 구축, 광역단위 배달강좌, 연합교양대학 운영

○ 사회적 자본 확충 및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행복한 공동체 추진

- 경제발전과 복지확대를 동시 충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
-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 사회적 자본 지원체계 구축,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체 조성
- 주민간 좋은 관계망 형성, 자발적 참여 촉직 및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씨앗사업 발굴·지원 / 마을공원, 마을기업, 마을텃밭 등 활성화

<표 5>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증가율

(단위 : 개소, %)

연 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증가율
2008	6	1	-	1	2	2	-
2009	9	2	1	1	3	2	50.00
2010	11	2	2	1	3	3	22.22
2011	19	3	5	4	3	4	72.73
2012	25	4	6	6	5	4	31.58

자료 : 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 품격 높은 자원봉사 최고도시

- 2013년 9월 기준 자원봉사 등록 301천명으로 대전시민 전체의 20%가 자원봉사 참여
-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역량을 강화
- 가족봉사단(복지시설), 재능나눔 봉사(소외계층), 맞춤형 봉사(집수리, 도배 등)
- 사회지도층의 재능기부와 나눔박람회 개최 등 기관 기업의 협력사업 확대

<표 6> 2011년 자원봉사자 현황

구 별	남	여	계
계	90,081	118,998	209,079
시 센터	921	861	1,782
동구 센터	14,698	16,951	31,649
중구 센터	13,842	19,195	33,037
서구 센터	33,730	45,622	79,352
유성구 센터	14,479	19,468	33,947
대덕구 센터	12,411	16,901	29,312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12

○ 특히 대전의 청렴이미지와 복지정책은 다양한 수상실적으로 입증된 바 있음

- 2012 지자체 청렴도평가 전국 1위
- 대한민국 인터넷소통(공공부분) 대상
- 전국 시도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 복지정책(희망복지지원단부문) 최우수, 장애인 복지 최우수, 보육사업 최우수 등

3) 제도적 여건

○ 대전시는 2012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정책의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다양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인권조례의 의의

-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무 중 인권과 관련된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로 인권사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의 이념상 본질적인 것이며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
-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차별금지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인권의 정의와 정신, 보호방향,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해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일련의 법적·제도적 장치
- 지역구성원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실천기준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내에서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 특히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위임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자치조례로서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목적을 위한 조례임에 의의가 있음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의 주요내용

- 동 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이 생활속에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시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때만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협력을 규정
-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및 이행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등에 관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며, 이러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
-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민간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주요내용으로 규정

○ 현재 광역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조례와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의 조례가 다소 내용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추후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처럼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인권 조례에 부

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권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로 인권 보장이 모든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인권 조례를 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상담하고, 인권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인권상담센터의 설치나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인권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는 인권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는 2년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자신에 관한 복지 등의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해도 국가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주민들의 결정을 제약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지역주민의 자치는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은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전국적 최저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추구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
 -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 더 강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개선이 요구됨
- 대전시는 인권조례 외에도 다수의 인권관련 조례를 운영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3.8 민주외거 기념조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정 지원조례 등
-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은 갖추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추진체계가 필요

4) 조직적 여건

- 대전시는 인권 업무를 전담적으로 추진할 담당관과 단위의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도시에 비하여 인권관련 기관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 업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많이 설치되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조직적 여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체험 및 법연수 전문기관으로 2007년 7월 23일 솔로몬 로파크가 설치 운영되어 인권친화적 법교육 실시 및 체험이 가능
 -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재판 등 법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법탐험 캠프, 교사 직무연수 등 다양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법의식 함양 및 인권교육 실시
- 대학의 인권관련 전문기관으로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권도시 구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5월 23일 충남대학교는 학내 및 지역사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개소
 - 정신건강 증진, 성폭력 예방, 인권보호, 상담 등의 업무 담당
 - 2013년 1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1개 대학과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로 대전충남인권연대, (사)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책센터, 대전장애인인권센터, (사)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등이 활동
- 대전의 사회복지시설은 580개로 생활시설 190개, 이용시설 390개가 활동

〈표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 분	계	사회 복지 관	노숙 인	지역 자활 센터	노인	장애 인	여성	아동	정신 요양	사회 복지
계	580	21	9	5	204	120	19	179	4	19
생활시설	190	0	1	0	112	18	10	32	4	13
동구	35	-	-	-	22	2	1	9	1	-
중구	38	-	-	-	24	1	4	7	-	2
서구	68	-	-	-	37	10	4	8	1	8
유성구	24	-	-	-	13	1	-	6	2	2
대덕구	25	-	1	-	16	4	1	2	-	1
이용시설	390	21	8	5	92	102	9	147	0	6
동구	95	5	7	1	22	26	2	31	-	1
중구	88	4	1	1	20	17	3	39	-	3
서구	81	7	-	1	26	17	2	27	-	1
유성구	48	1	-	1	4	20	-	22	-	-
대덕구	78	4	-	1	20	22	2	28	-	1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통계현황(2013. 6월 기준).

- 또한 201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가 예정되어, 인권상담과 조사, 교육과 홍보, 인권정책 의제의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대전을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추진 여건 분석 결과

- 대전시는 이미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인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 제도적 여건 및 조직적 여건은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역사문화적 여건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충절의 고장인 대전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대전시민들 또한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이 강하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시민운동 참여의향이 높아 인권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정목표 5가지 중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 행정은 인권이 지향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소통행정 구현, 나눔·성감·상생의 대전의 복지구현, 사회적 자본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인권도시 구현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적으로도 대전은 2012년 대전광역시 인권도시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인권관련 제도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직적 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부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로파크, 대학의 인권관련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활동하고 있어 인권관련 업무 추진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대전시 내에서 인권업무를 총괄할 담당관과 단위 부서의 설치, 인권 읍부즈맨제도의 도입,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등은 앞으로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인권도시 구현의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1절 인권정책의 비전

제2절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추진 전략

제3절 대전 인권 도시 발전 방향

제4절 바람직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제4장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1절 인권 정책의 비전

- 대전의 도시 이미지는 과학도시, 복지만두레 등 민간복지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도시 등이 있으므로 기존 도시이미지의 연장 선상에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전의 비전인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와의 연계선상에 인권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되, 시정의 방향인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과 시정목표인 첨단경제도시, 교육문화레저 특별시, 따뜻한 복지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행정과 서로 배치되지 않고 서로 조화되고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설정
- 인권도시 대전의 비전은 상징적인 선언이나 완결된 이념형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도시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설정하되 인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설정
-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대전의 총역량. 즉 시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대전시의 인권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 역량, 대전시의 인권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단체장 변동, 정책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비전 설정
 - 인권관련 전문가의 회의, 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 정책워크숍, 공무원 및 시민여론 조사 등을 거쳐 시민과 인권단체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비전을 설정

-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설문조사 진행
- SWOT 분석으로 선언적 수준이 아닌 실제 행정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전략 수립
- 국가 및 타 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전만의 비전 설정
 - 국가인권위원회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광주광역시 :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제2절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추진 전략

1. 추진전략

- 대전을 인권도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도시의 지속력 유지, 인권보장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등 브랜딩, 인권의 지구적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협력 등이 필요함
 - 인권도시가 공통적 가치 및 원칙은 소수집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 등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과제의 추진이 필요
 - 첫째,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 둘째,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셋째,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넷째,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브랜드 제고
 - 다섯째,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을 위하여 인권실

태조사가 필요. 즉 인권 사각지대 발굴,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도별·대상별 인권 실태조사 필요

- 인권지표는 대전의 인권상태를 파악해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객관적 현황이자 지향점
 - 인권지수는 인권보장과 개선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
 - 주요 지표별로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인권개선 방안을 도출
-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인권친화적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인권이 문화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체화되도록 교육과 학습체계를 마련
 -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이 전체 시민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
-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UN, PDHRE 등 국제인권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해 인권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교류
 - 인권을 도시발전의 원리로 삼고 있는 각 도시와 인권정보, 인권정책, 인력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 인권도시 간 국제네트워크를 결성해 학술세미나, 인권정책 및 행정 사례발

표, 인권의제의 개발 등을 수행

- 국제무대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재해지역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지원활동

○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 브랜드 제고

- 인권도시 대전의 인권활동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야 함
- 인권도시 대전의 브랜드와 과학도시 등 다른 도시 브랜드를 결합하여 세계 속의 대전이라는 도시 위상을 확립
-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세계인이 찾는 학습도시이자 관광도시로 브랜드화

○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 인권도시는 시민과 행정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삶 속의 인권 개선이 가능함
- 시민사회는 인권을 쟁점화하여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야 함
- 인권헌장과 인권조례는 선언이나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사회적 규범과 법적 강제 장치로 기능해야 함

2. 인권도시 추진체계의 구축

1) 추진체계의 필요성

-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증진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권 보호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
 -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인권 보호 체계의 구축은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의 시혜적 태도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권문제 처리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권 존중의 사회건설을 도모
 - 급식조례, 장애인 권리 보장 조례, 노인 복지 조례, 시민 복지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확장 추세
 - 모든 법이 인권친화적인 것은 아니므로 인권 중심의 사고에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인권업무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감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인권 단체 활동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관민 협력 위원회 결성이나 인권위원회 활성화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전담부서의 설치

-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인권발전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발전이 미흡한 것은 인권전담기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9조제1항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권관련 업무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등 관련 분야가 광대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 광주 등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는 대부분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서울은 2012년 9월 28일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인권담당관 신설하고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시민인권보호관 15명으로 구성
 - 광주는 2010. 8.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도시행정 차원에서 인권을 비중 있는 고유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함. 정책팀, 교류팀, ombudsman팀, 5·18선양팀 19명으로 구성
- 따라서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 또는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담부서는 인권관련 실태조사, 시민인권옹호관(ombudsman) 운영 및 업무 지원,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의 업무를 처리

3)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들은 범죄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조사 및 구제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현장에서 행정적 제도를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장치가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있으나 국가 전체를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대전시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인적·물적 한계가 존재
 - 감사원 또한 정부정책이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 개인의 의뢰보다 기관이나 단체가 의뢰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존재
 - 또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사조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된 조직으

로 민원실과 감사관실이 있으나 민원실은 시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해당부서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답변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사 및 결과를 통보하는 일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감사관실 또한 대전시와 소속기관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사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여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결론적으로 시민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는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구제하고 개선하는 결과를 민원이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에 있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부서와 밀접한 협조체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부터 소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법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의 상담사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666건, 차별행위가 158건이며, 진정접수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335건, 차별행위가 455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성희롱 진정 접수도 10건이나 됨

○ 따라서 여러 국가나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적 조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광주의 경우 인권담당관실내 인권옴부즈맨 지원팀을 두고 2013. 5부터 인권 옴부즈맨 시행 /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7인내의 합의제 기구

- 서울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시간제 지방 계약직 공무원을 시민인권보호관 임용하여 시 지도감독 기관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시 정책 개선 권고 업무 처리
 - 옴부즈맨(Ombudsman)이라는 용어는 1809년 스웨덴에서 태동 다른 사람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로 행정감찰관, 호민관, 보호관 등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나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옴부즈맨이라 발음
 - 옴부즈맨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불만 및 고충을 접수, 조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
 - 옴부즈맨은 설치 대상에 따라 의회형 옴부즈맨과 행정부형 옴부즈맨으로 구분되고, 옴부즈맨 수에 따라 1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옴부즈맨과 복수의 옴부즈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형 옴부즈맨으로 구분
-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담당
-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상담, 조사, 개선 권고하고 그 권한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4) 인권위원회 활성화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르면 인권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으로 규정
- 인권에 관한 사항은 정치, 경제, 복지, 환경 등 많은 영역에 관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권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관부서가 다르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인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의 인권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의 내용에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인권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에 대한 자문의 기능도 부여하여 인권관련 정책을 총괄
 - 인권정책위원회가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권정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탈피하여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사회와 대전시간의 가교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심도 있는 안전검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및 지자체 인권정책 발전 논의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개최

제3절 대전 인권 도시 발전 방향

1. 인권제도 기반구축

-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위하여 행정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대전시 차원의 인권보장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기반구축은 인권행정 체계 강화,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을 통한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 및 강화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음
 - 인권제도 기반구축은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
 - 인권행정 체계강화는 전담부서 설치, 옴부즈맨제도 도입,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인권법률상담서비스,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은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인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형성

2.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1) 인권문화와 인권교육

- 인권의 가치와 문화는 인권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인프라로서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시민감수성 향상, 인권문화 조성 활성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음
 -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무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에서 인권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정례

화하고 그 내용을 혁신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시민감수성 향상은 인권주체인 시민들이 스스로 자력화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와 문화가 삶 속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권문화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권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인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하도록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는 인권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인권문화 확산이란 일상생활 방식, 사회 전반에 펼쳐 있는 가치, 규범, 관습 같은 문화적 요소, 사회제도 등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으로 인권교육을 통하여 확산
-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화적 토양을 인권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기여
- 나아가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학생들이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갖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참여할 때 미래의 지역 사회는 훨씬 더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2) 인권 교육의 개념과 목표

- 인권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가 될 수 있다” (Hugh Starkey)에서 출발함

- UN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에서는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할 것, 평화의 구축 및 유지,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 으로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 이라고 정의
-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위한 기술습득 및 인권친화적 행동유도라 할 수 있음
-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
 - 인권에 대한 지식습은 인권이란 무엇이며,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임
 - 나아가 인권의 역사는 어떤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확대·심화되었는지, 각 인권의 영역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인권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임
-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으로 모든 사안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권의 기준으로 해석하며, 인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
 - 인권감수성의 향상은 인권침해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갖게 함

○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위한 기술습득

- 인권상황이나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인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임
-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권침해 당사자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대해야 하는지, 인권단체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임

○ 인권친화적 행동유도

- 인권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임.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과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위한 기술을 익혔다면 종래에는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3) 인권교육의 3요소 및 선결과제

-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함

○ 인권에 관한 교육

- 인권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함. 자신의 권리와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인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

○ 인권을 위한 교육

- 실제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임.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받아들여 일상생활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 인권을 통한 교육

- 인권교육은 인권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충분히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없으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친화적이어야 함.
-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어야 하며, 모든 참여자의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 이러한 방식의 인권교육은 과정 그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

○ 인권교육을 위한 선결과제

- 교육 담당자에 대한 인권 교육 : 인권 지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을 이해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숙지
- 교재나 교안 등 교육자료 준비
- 포괄적 인권 교육 정책의 수립
- 교육환경 자체를 인권 친화적으로 변경

- 교육대상자의 사회적 배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선정 : 양성평등, 성폭력 방지, 학교 폭력 근절, 인종 차별 금지 등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나 일반적 인권 지식을 적절히 선정

4) 인권교육의 발전 방향

○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 현재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10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의 실시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 권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인권교육의 근거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민간영역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권교육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종합계획에는 대전시가 주관하는 교육계획뿐만 아니라 시행체계(전담부서)의 설치방안, 교육청, 대학, 민간영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 각 영역별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 및 학습도구를 개발함
- 프로그램과 교재 등은 UN, 해외 인권교육 모범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개발하되,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유·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교재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토록 하고, 시민,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재는 대전시에서 개발하도록 함

-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설계의도를 포함하고, 교재에는 교수기법 또는 교습안을 포함하도록 함
-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운영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과 교재의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 인력풀 양성

- 인권교육 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강사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 인권교육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강사모델이 가장 적합하나 현실적인 여건 상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사 인력풀을 양성할 수 있는 집중과정을 개설해 운영
- 강사 양성과정은 투입될 프로그램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개별 양성과정과 몇 개의 영역을 묶은 종합과정의 이중적 과정을 개설해 운영
- ‘행정공무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원대상 인권교육 양성과정’ 등의 개별과정과 ‘공공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회복지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종합과정으로 구분함
- 교육영역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공공영역의 경우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지역 대학과의 연계 또는 위탁 프로그램으로 시행

○ 시민대상 인권교육의 활성화

-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지식 습득, 인권감수성 향상,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식, 각 영역별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기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전시가 운영하되

-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해 개설하고, 10강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인권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각 자치구별로 존재하는 평생교육원 등에 위탁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이러한 경우 ‘학점은행’ 등에 등록할 수 있는 학점취득의 방법을 마련함

○ 시민 대상 심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기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권리를 알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심화 프로그램은 각 영역별 인권문제에 한정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한 것임
- 예컨대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성소수자의 삶과 인권’ ‘노인, 빈곤, 복지 그리고 인권’ 등 한 영역에 대한 심화 교육적 성격을 가짐
- 이 프로그램은 과정 주제와 관련된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대전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교육 지원

-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이주자, 성소수자, 빈민, 병력자 등 인권을 침해당하기 쉬운 조건이거나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들의 경우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특히 ‘당사자성’ 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인권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대전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전문가집단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인, 종교인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하며, 인권침해를 구제하거나 사법적 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집단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함. 이와 관련해 언론인, 종교인,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들 집단의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협회, 종교단체, 언론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협조와 자발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장려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인권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학교 인권교육의 활성화

-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시된 기준이 우리의 교육과정 운영과 차이가 있으므로 과정에 개의치 않고 연령별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
-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은 우선 교육청이 관리·감도권한이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교육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은 ‘전문가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아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타인존중’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청과 대전시가 공동주관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대전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상 독립된 시민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과정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시민으로서 인권을 향유하고 증진하며, 옹호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초·중등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인권 관련 교양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인권강좌가 확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대전대, 목원대 등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인권 관련 강좌의 확대 및 과정의 개설을 지원하고, 특히 일반시민 또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도 수강 및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
 - 대학에서의 인권과목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캠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인권교육 연구소 등 인권관련 기관 지원
- 인권과 관련한 대학의 연구소 또는 센터와 대전시가 포괄적인 MOU의 체결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
 - 대학의 인권 관련 교육 및 연구를 대전시가 지원
- 공공영역의 인권교육 활성화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에서는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과 함께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에 초점을 두어 공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영역의 인권교육을 강화

- 현재 대전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 및 산하 자치단체, 공기관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간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년차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함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복지담당, 정보담당, 보건의료 담당 등 인권과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2시간의 특강이 아닌 15시간 이상의 ‘인권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함
 - 대전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의무화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년간 관련 분야의 인권교육을 진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함
 - 사회복지시설 영역으로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며,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시행함
 - 대전시의 지원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또는 과정의 이수를 장려하고 인권일반, 아동인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친화적인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
 - 일반행정 영역 이외에 경찰청, 검찰청 등과 인권교육 MOU를 체결해 인권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인권교육 관련 활동 지원 활성화
- 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즉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 담론과 관련한 학술행사를

지원

-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방법론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업이므로 인권교육 실천사례의 수집 및 발표 사업의 활성화
- 대전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 및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의 결과를 백서 등의 형태로 발간·보급
- 각 인권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인권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인권작품 공모전, 인권영화제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인권문예전 주최 등 인권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예를 통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활동 또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내교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콘텐츠 및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인권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이를 위해 국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
- ‘국제인권단체 인턴 파견’, ‘인권침해 지역에서의 학생봉사단 운영’ 등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1)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중요성

- 인권의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최우선의 중요 과제로 하여야 함
- 장애인의 경우 모든 공공시설·문화시설 및 대중교통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야 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시설건립 위주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
- 이주민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 여성의 경우 기존 정책 외에 여성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미혼여성 등이중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각별한 반차별 정책이 필요하며,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와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정책 추진
- 노인의 경우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권리보장과 저소득층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
- 성소자의 인권은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실태 조사 등이 요구됨
- 어린이·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
- 그 외 북한이탈주민, 병력자, 범죄피해자, 철거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추후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함

2) 장애인

-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를 때 장애인구는 1995년 1,053천명에서 2011년 2,683천명으로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6.02%로 장애인 인구 규모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참조)
- 대전시의 경우 2012년 등록 장애인은 71,647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4.6%
 - 1급 6,287명, 2급 9,606명, 3급 12,203명, 4급 10,098명, 5급 14,875명, 6급 18,578명

<표 8> 2012년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성별		장애등급					
		남자	여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2년	71,647	41,909	29,738	6,287	9,606	12,203	10,098	14,875	18,578
동구	15,079	8,953	6,126	1,230	2,046	2,641	2,280	3,083	3,799
중구	14,088	8,238	5,850	1,134	1,894	2,412	2,045	2,998	3,605
서구	20,748	12,063	8,685	1,883	2,660	3,531	2,822	4,306	5,546
유성구	10,629	6,108	4,521	959	1,461	1,787	1,425	2,241	2,756
대덕구	11,103	6,547	4,556	1,081	1,545	1,832	1,526	2,247	2,872

자료 : 대전광역시, 『2013년 대전의 사회지표』

- 장애인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욕구의 절대규모가 커지고 욕구의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힘든 삶을 영위

- 2010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총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1.9%의 절반 수준
 - 고용율도 36.0%로 총인구 고용율 60.0%에 비해 낮으며, 실업율은 6.6%로 총인구 실업율 3.2%에 비해 높음
 - 2011년 기준 취업장애인의 소득은 월평균 142만원으로 동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260만원의 54.6%에 불과
 - 교육, 주거, 보건의료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상황은 비장애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열악
- 과거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지배하였던 재활모델이나 시설수용모델을 거부하는 권리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의 등장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향상과 관련된 정책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겨 지역사회정착이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 과제로 부상
- 지역사회정착이란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배제되지 않고 통합되고 주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향상이며 장애인 사회의 주체로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
-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 장애인정책은 공적서비스 분야에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창업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이동권 관련 각종 편의시설 기타 사회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여 수급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만성질환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편의시설 구비 지원금 및 인센티브 부여, 수진보조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접

근성을 향상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와 여성장애인 건강 및 모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특히 장애인 진료 상황의 소통 난점 해소를 위하여 장애특성 인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의 인권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의무고용제도 합리화 및 중증장애인 고용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과 직업재활의 연계를 강화하며 중도장애인의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의무고용제도 합리화는 법적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 고용주책임을 강화하고 고용후 사후지도를 강화

- 중증장애인의 고용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을 개발

○ 장애인은 낮은 주거안정성, 열악한 주거환경, 적절한 주택접근의 어려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주택 임대료지원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여야 함

○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생하는 장애로 평생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부모 등 가족이 대부분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은 일생생활에서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자폐성 82%, 지적 46%)

- 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부담의 완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미흡하여 발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적절한 재활 치료가 부족

- 발달장애인의 능력계발과 일자리 지원 미흡(발달장애인 취업률 16.5%)

-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립하는 기반마련하고, 발달장애

대상 전용 직업재활시설 확보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하여야 함
 - 2008년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의 법정 의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는 3,760,792개임에 비해 실제 설치 수는 2,915,369개로 77.5%의 설치율
 - 2012년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86.5%임에 비해 대전은 76.4%
 - 2012년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90.6%임에 비해 대전은 89.8%
 - 2012년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77.0%임에 비해 대전은 76.9%
 - 2012년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98.0%임에 비해 대전 96.4%

3) 이주민 지원

- 체류외국인의 지속적 증가
 - 2012년 기준 인구는 50,948,272명이고, 체류외국인은 1,445,103명으로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84%
 - 체류외국인 1,445,103명 중 합법체류자가 1,267,249명, 불법체류자가 177,854명으로 12.3%를 차지

- 특히 결혼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가족의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가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한국남성과 결혼이주 여성간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이주여성노동자와 이주남성노동자 간의 국제결혼은 정책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권침해사례가 자주 발생
- 다문화가족이란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남녀의 결합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정의(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참조)
- 대전시의 2010년 다문화가구는 6,839가구로 총가구의 1.3%(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표 9>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현 황	122,552 (100.0)	125,087 (102.1)	141,654 (115.6)	144,681 (118.1)	148,498 (121.2)	102.6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2013.

<표 10> 2012년 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

	총계	남자	여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구성비율
대전광역시	3,440	350	3,090	10.2	89.8	2.3
전국	147,591	20,887	126,704	14.2	85.8	100.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2013.

○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건도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권 정책 필요

- 2010년의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건수는 7,904건
-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이 내국인 보다 높은 것은 결혼이주과정에서 속성의 혼인성립을 위한 정보의 왜곡과 불균형, 인신매매성격의 결혼중개 등 매매혼적인 결혼성립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한 가정폭력이 주원인

○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 언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즉, 결혼 생활의 부부의 갈등,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시대 식구 특히 시부모와 갈등, 정보소외 및 사회 참여 기회 제한, 문화적 갈등 유발 / 여성결혼이민자의 58%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베트남 여성들의 9%는 부부간 대화거의 없이 생활(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참조)
- 배우자간의 연령차로 일반적으로 부부간 연령차가 높으면 적응도가 낮고 결혼의 질이 낮아 짐
-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의 나이차는 2.4세인 반면 국제결혼 부부의 나이차는 11.5세
-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 또한 100-200만원 미만인 38.4%, 100만원 미만이 21.3% 등으로 경제소득이 낮음

○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가정폭력, 엄격한 생활통제, 경제적 어려움, 체류자격의 문제, 주거의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사회적 소외,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음

○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취업지원, 아동의 인권보장 그리고 이주민의 정착 및 근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으로 부터의 인권보호

- 200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이주여성 긴급전화 상담결과 분석에 따르면 상담내용 중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 갈등이 28.1%, 이혼 등 법률문제가 14.8%로 사실상 가정폭력 관련 문제가 전체 상담의 44% 차지
- 2007년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17.5%인 반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8%에 불과
- 결혼이주민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가정폭력 등에 효과적 대응 곤란
- 물리적 폭력 외에 정신적·언어적 학대와 협박 등의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인권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인정 및 법률지원, 주거보장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폭력가해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권자인 한국인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와 본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독립적 육아양육 보장
- 가정폭력 등 학대로 인해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주여성 쉼터는 이주여성의 언어, 문화, 본국과의 관계, 가족관계, 퇴소 후의 자립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역을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

- 결혼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사회복지 혜택을 통하여 결혼이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강구
- 결혼이주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성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

○ 결혼이주민의 취업지원

- 결혼이주민의 취업지원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시민성 확보, 능동적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추구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결혼이주민 중 40.2%가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률은 37%로 남성 7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직종은 최상층과 최하층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대부분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업
- 취업중 결혼이민자들은 주당 평균 43.21시간 일하며, 월평균 소득은 108.92만원으로 대부분 저숙련직에 종사하여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대우를 받음
- 취업중 결혼이주민은 언어소통, 차별과 편견, 고된 일, 저임금 등의 어려움을 느낌
- 대전시민은 다문화가구원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가장 선호. 즉 2012년의 경우 2011년 대비 경제적 지원선호는 28.2%로 5.3%p 증가한 반면, 한글·문화교육 서비스는 18.4%로 8.6%p 감소(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 결혼이주민의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결혼이주민의 국적과 지역, 성별, 체류기간별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하여 결혼이민여성 인턴,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가족봉사단 및 자조모임 활성화
- 공무원 다문화 이해과정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화합한마당 개최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강화

○ 이주민 아동의 인권 보장

- 2012년 1월 기준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자녀는 3,847명(남 1,990명 여 1,857명)
- 결혼이민자가 출생한 아동의 경우 속인주의원칙상 국적으로 취득하므로 사회문화적 차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는 평등한 반면, 이주민 노동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부모로 둔 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권, 교육권 등 많은 부분에서 인권 침해 사례 발생
-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평등권 등 아동의 주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한국의 노동이주 아동의 국적, 인종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하여 언어발달,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프로그램 운영

○ 취약 이주민의 정착 및 근로과정에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대책 마련

-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내에서의 일상적인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경험
- 이주노동자의 경우 보통 평균일일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며, 임금체불도 증가

- 이주 노동자의 입국전 출입국제도, 노동관계법, 권리구제방안 등을 포함한 내용을 모국어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 이주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체결시 노동조건과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사업장내에서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 시행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및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 노동자는 남성 이주노동자와 분리된 기숙 공간의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그 외에도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주민의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실행방안을 강구
- 이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 이주민 컴퓨터 운영 지원
 - 이주민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언어 및 상담지원
 - 이주민의 문화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적응지원
 -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해소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피해자 구제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결혼 이민자의 인권강화 핵심 추진과제를 참고로 대전시의 정책 개발

**<표 11>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결혼 이민자의 인권강화
핵심추진 과제**

분 야	과 제
인신매매성 결혼방지대 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범에 맞는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규정 마련 ● 중개업에 의한 피해여성의 보호와 현지중개업 규제 방안 마련 ● 대규모 국제결혼 중개사업 통제 ● 관련 공무원과 관계에 대한 인권교육강화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결혼 이주민 의 혼인권 보호 및 입 국과 체류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과 비자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 현지결혼 후 한국인 배우자 미초청 피해 방지 장치 마련과 피해자의 체류 및 취업지원 ●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 시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권 등 법적 지위 보장
가정폭력으 로부터의 인 권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와 법률지원 및 체류자격과 생활권 보장 ●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한 친권자인 한국인 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 자녀가 없더라도 폭력 및 학대로 피난처에 머무는 여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피난처 운영 및 자율성 보장
결혼이주민 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아보육법, 모자보건법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통번역 가입 안내 및 정보제공 ●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 유산상속, 보험수급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행복권 보장 ● 출신국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취업기회 제공

4) 여성

- 2012년의 대전시 여성인구는 760,912명으로 전체 1,524,583명의 49.9%(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 여성 경제활동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 돌봄기능 약화
 - 이혼, 가정폭력 등을 가정해체가 늘고 위기 가정 및 청소년 증가
 - 신뢰와 배려의 ‘대전형 가정 친화문화 조성’으로 가족기능 회복에 노력하여야 함
 - 부부가사 분담, 돌봄 기능 지원 강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추진
 - 여성 취업 및 창업 박람회,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인지도가 낮음
 -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 필요
 - 정책의 기획,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제고와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
 - 주요 정책과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확대와 추진체계 구축.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공원·시설 설치 등 중점 추진분야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최근 여성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범죄 피해로 부터의 여성 안전지원정책 필요
 - 여성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정책 필요
 - 대전시는 2005년까지 주된 가구의 유형은 4인 가구(28.0%)였으나, 2010년에는

1인 가구가 25.3%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여 30년전보다 10배 증가

- 대전시의 1인 가구 비중(25.3%)은 전국(23.9%)에 비해 1.4% 높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2.7%으로 1980년의 5.0명과 비교하면 2.3명 감소로 대전시의 1인 가구의 비중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음(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 지표』, 참조)

<표 12> 대전 여성가구주 현황

(단위 : 가구, %)

연별 구별	일반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수	남성가구주 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2011	532,643	142,095	390,548	26.7
동 구	93,347	27,286	66,061	29.2
중 구	89,902	24,644	65,258	27.4
서 구	178,499	50,180	128,319	28.1
유성구	99,256	22,048	77,208	22.2
대덕구	71,639	17,937	53,702	25.0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12.

○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다음 6가지 사항을 권고

- 교육종사자·보건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들이 관련 법률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인지하며 폭력사건의 신고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성인 성폭력 사건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 여성경찰수의 증가,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조치를 취하고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구제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
 - 배우자 강간을 범죄로 명시하는 입법
 - 가정폭력을 비롯한 모든 여성폭력의 실태, 원인, 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수행, 통계와 조치의 결과 보고를 할 것을 권고
-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교육 강화
 - 1.2인가구 임대주택에 맞는 방법예방기준 마련 및 운영
 - 취약 및 밀집지역 거주 여성 안전장치 및 비상벨 설치
 - 골목길, 공원, 공영주차장 조명개선을 통한 밝은 환경 조성
 -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폭력피해(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여성폭력예방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즉 대전시, NGO, 경찰청 등 여성폭력 예방 협조체계 구축

5) 아동·청소년

○ 대전시의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76,863명으로 전체인구의 25.29%

<표 13> 2010년 대전시 아동 청소년 인구

(단위 : 명, %)

연 령	인 구	구 성 비
0-4	71,984	4.83
5-9	79,733	5.35
10-14	104,938	7.04
15-19	120,208	8.07
총인구	1,490,158	100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12.

○ 아동 및 어린이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안전, 위생안전, 가정안전, 범죄안전, 일반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

- 교통안전은 일반교통과 자전거에 대한 안전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자전거 안전교육이 요구됨
- 시설안전은 놀이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으로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의 현대화 및 어린이놀이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 위생안전은 식중독에 대한 안전으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가정안전은 어린이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에 중점
- 범죄안전은 학교폭력 및 강력범죄에 대한 안전으로 배움터 지킴이 활성화, 학교내 CCTV 설치,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WEE 프로젝트 사업의 활성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사업, 아동안전 지

김이 집 확대 및 활성화, 안심귀가 시내버스 확대 등을 추진

- 일반안전은 보행자 안전, 사이버 안전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
-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학대, 가출, 자살 등 청소년 비행의 문제,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
- 아동학대, 가출, 자살의 증가에 따른 아동 청소년 권리 보장
 - 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 위기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 재활 체계 구축
-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 2011년의 경우 15-19세 취업자가 7천명 정도(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12. 참조)
 -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 발생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청소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부족 및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부족에 기인
 - 청소년 고용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노동법령상 의무와 근로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및 노동존중 사회문화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2011년 총학생수 63,496명 중 1,575명 2.48%가 학업중단
- 과열경쟁,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지속 발생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서비스 미흡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적 사례 발생
-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위기청소년 Care 등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보호·지원강화
-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한 가출청소년 선제적 발굴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지원

<표 14> 2011년 학업중단을

(단위 : 명, %)

구 분	총 학생수	학업중단자						중단율
		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2011년	63,496	1,575	74	65	9	699	728	2.48
동구	9,375	170	10	7	1	97	55	1.81
중구	15,568	350	18	22	-	187	123	2.25
서구	18,815	348	25	24	-	77	222	1.85
유성구	14,865	565	14	8	7	262	274	3.80
대덕구	4,873	142	7	4	1	76	54	2.91

자료 : 대전광역시, 『2013년 대전의 사회지표』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유해환경지도·단속 및 학교주변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강화
-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기반 구축
 - 어린이회관 체험공간 확장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 및 기능활성화 추진
 - 보호아동의 자립 및 사회적 역량 배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아동복지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강화
 - 아동의 돌봄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평가 강화

6) 노인

-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행
 - 2013년 총가구 18,206,328 중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가 3,546,108(19.5%)이며,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가 1,252,012(6.9%)
 - 2013년 5월 기준 대전시 노인인구는 146,490명으로 9.58%(대전광역시 저출산

고령사회과 주요업무통계현황 참조)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학대, 노인의 사회참여, 독거 노인의 안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필요

- 노인들의 고충으로 경제적 문제(4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외로움, 고독(21.9%), 건강과 사회적 소외(각각 10.4%)의 순(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 노인 학대 예방사업 확대

- 노인 학대 사례는 지속 증가
-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식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
- 가족내 학대의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외부적 개입의 곤란
-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보호 강화
-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및 홍보 교육

<표 15> 노인학대 유형

(단위 : 건, %)

	계	신체	정서	성	재정	방임	자기방인	유기
2008	3,897	874	1,561	20	446	839	117	40
	100.0	22.4	40.1	0.5	11.4	21.5	3.0	1.0
2009	4,588	1,127	1,853	37	554	806	129	82
	100.0	24.6	40.4	0.8	12.1	17.5	2.8	1.8
2010	5,076	1,304	1,981	39	574	891	196	91
	100.0	25.7	39.0	0.8	11.3	17.5	3.9	1.8
2011	5,765	1,419	2,307	72	607	1,038	236	86
	100	24.6	40.0	1.3	10.5	18.0	4.1	1.5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2013.

<표 16> 노인학대 주된 행위자

(단위 : 명. %)

본인	친족					기타	계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기타		
224	1,777	263	538	481	176	407	3,866
5.8	46.0	6.8	13.9	12.4	4.6	10.5	100.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2013.

○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

- 대전시 거주 65세 이상 노령층의 절반 이상 53.0%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실제 노인인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 65세 이상 노령층의 절반 이상 50.6%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으나 직업이 있는 비율은 17.1%에 불과
-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층(3.1%)의 절반 이상(53.4%)은 보수는 낮더라도 시간이 짧은 일자를 희망(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재능기부 등 복합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특히 과학과 교육의 도시인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하이엔드 고령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 복지 사각지대의 홀로 사는 노인 증가에 따른 지원 기능 강화

- 2013년 6월 30일 기준 독거노인은 32,648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557명, 일반노인이 26,091명(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 주요업무통계현황 참조)
-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조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안전분야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강화

〈표 17〉 독거노인 현황 추계

연도	독거노인 수	구성비	증가율
2010	21,846	1.45	-
2011	23,813	1.56	9.00
2012	25,615	1.66	7.57
2013	27,460	1.78	7.20
2014	29,343	1.89	6.86
2015	31,208	2.00	6.36
2020	42,403	2.68	7.18
2025	58,390	3.66	6.47
2030	76,925	4.80	5.11
2035	96,216	6.04	4.46

자료 : 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 노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12년 조사결과 노후에 희망하는 생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며’가 응답자의 45.1%로 문화향유에 대한 의욕이 강함 (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 어르신의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 해결 미흡
- 다양한 연령층, 지식층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맞춤형 정책 개발
-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문화 취약계층에게도 문화 향유 기회제공

4.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인권지향적 도시환경은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의 실현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음
 -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는 대전시민 누구나 장벽없이 이동할 권리와 도시의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공공시설에 불편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도시임
 -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는 각종 범죄,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실현하고 시민의 생명권 침해가 줄어드는 도시임
 -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는 시민들에게 아직은 낯선 인권이라는 개념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공원조성, 인권 공공디자인 추진을 통해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도시임
 -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는 적절한 주거기준선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주거 질을 보장하고 재개발시 강제 되거나 상가 임차인의 권리 침해 등을 해소하여 거주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도시임
- 저상버스, 콜택시 등 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권 제약에 따른 차별 존재
 -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부족
 - 2012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10.0%로 전체 3,206대가 보급, 대전은 보급률 9.0%로 87대 보급
 - 또한 대전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개인용무 수행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는 60대(보급율 36.7%)이며, 2009년 연간 이용 장애인 수는 82,584명으로 이용률 지표값이 5.1에 불과

- 2013년 기준 저상버스 168대 운행
- 2013년 장애인 콜택시 94대(승합 39대, 개인택시 55대), 7시부터 22시 30분 까지 운행
-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대중교통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보수 정비
- 독립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 주변도로 등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사람 우선의 보행권 확보

○ 범죄로부터의 안전도시 구현

- 2012년 대전시는 총 46,660건의 범죄 발생한 반면 검찰 기준 검거율은 64.6%에 불과하여 범죄로부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모색하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자치구별 거주환경의 차이로 인한 치안환경 격차 심화
- 성범죄, 학교폭력 등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필요
- 범죄예방 디자인, 주택가 조명개선 등 범죄예방 정책 추진

<표 18> 2012년 대전시 범죄발생 현황

구분	계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총범죄	46,660	13,547	3,997	15,414	7,335	6,367	
형법범 범 계	계	29,627	8,876	2,360	10,184	4,402	3,805
	재산범죄	21,438	6,186	1,763	7,394	3,393	2,702
	강력(흉악)범죄	734	222	65	243	88	116
	폭력범죄	4,708	1,648	356	1,480	544	671
	위조범죄	669	220	30	265	75	79
	공무원범죄	46	10	1	21	9	5
	풍속범죄	264	114	13	67	36	34
	과실범죄	181	51	12	71	25	22
	기타형법범	1,587	425	111	643	232	176
특별법범계	17,033	4,671	1,637	5,230	2,933	2,562	

자료 :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

<표 19> 2010년 범죄피해자조사 결과 대전시 범죄피해율

구 분	가구대상범죄		개인대상 범죄	
	빈도	피해율(%)	빈도	피해율(%)
서울특별시	45	4.6	53	2.4
부산광역시	15	3.3	35	3.4
대구광역시	22	5.9	28	3.1
인천광역시	25	6.6	45	5.6
광주광역시	23	7.9	37	5.8
대전광역시	16	5.5	30	4.5
울산광역시	14	5.6	11	1.9
광역시	115	5.7	186	4.0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 범죄피해자 지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대전시의 가구대상 범죄피해율은 5.5%, 개인대상 범죄피해율은 4.5%로 광역시 평균 범죄피해율을 상회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찰과상, 자상, 불면증, 식욕장애 등의 신체적 피해와 공포, 죄책감, 수치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심리적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이나 언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분별한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수입 중단, 의료비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술과 재활에 의한 신체적 고통, 그리고 주거의 확보와 취업활동 등 많은 문제에 부딪치면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다시 2차 피해를 경험
- 특히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의 경우 심한 경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경험
- 범죄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형사사법제도는 가해자 처벌을 통한 법적 평화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범죄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소외
-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지원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법적 평화의 회복과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 책무를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책무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한정적인 역할만을 담당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하나의 지표로 작용함에 충분하므로 대전시만의 범죄피해자 정책을 모색
 - 즉 범죄피해자는 생명·신체·정신·재산 등의 다양한 피해내용과 피해의 원인, 그리고 피해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상담, 의료, 경제, 주거, 취업 등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보호와 지원
 - 종전 자원봉사제도, 복지만두레 및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직접적 지원 확대 방안 모색
 - 24시간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등 범죄피해자 조기지원 시스템 확립
 - 상담, 진술, 치료, 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 의료, 주거,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다각적 자립적 자활 지원
 - 사회적 기업 설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범죄피해자 취업지원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확대
-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예방 교육
 -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 서비스 추진
 - 피해자 보호 및 치료 기능 강화와 보호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5.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시민사회와의 인권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전시의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
-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국제 인권도시 등 인권의 각 주체들이 인권의 기준과 규범에 근거해 참여하는 인권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 참여 인권행정 운영,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실현
 - 시민참여 인권행정 운영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권가치 공동체로서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지속적 교류를 시행하고 인권침해시 시민 주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은 인권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지역간, 도시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 인권협력사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새로운 이념과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
- 현재 지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들과의 소통과 연대가 전략적으로 중요
- 인권은 취약계층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기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권리 충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미비한 수준으로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해주고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인권관련 정보나 지식의 원활한 공유를 통한 인권증진 활동
 - 인권 NGO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인권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 NGO의 활동을 적극 지원
 - 인권도시 추진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생활 밀착형 인권을 발굴해 제안하는

모니터 활동 인력을 양성

-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인권시민디렉터 자격 부여하고 최소 활동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부녀회, 아파트단위 주민 조직을 중심으로 생활 속 인권활동 전개
 - 인권현장 감시 및 모니터링, 생활 속 시민 인권정책 제안, 인권자원봉사, 인권정책 평가단 등 활동
- 또한, 정책 목표와 가치에서 유사성이 있는 사회적 자본, 복지만두레, 자원봉사 등의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제4절 바람직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배경

- 국내외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며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였지만 일상생활의 터전으로 인권 실행의 주요 현장인 지역공동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여전히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정책은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인권상담 및 민원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
- 지역 사회 내 인권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인권 마인드와 정책 등은 부족
- UN 등 국제 사회도 기존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고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실천을 강조
- 각 도시와 지방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1997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처음으로 인권도시로 선포된 이래, 2010년 기준으로 29개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되었고, 아시아에는 인도의 Nagpur, 필리핀의 Bucuy Municipality, 대만의 Kaohsiung 등 세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됨
- 국내에서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이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인권현장 및 인권정책기본계획 등을 수립

- 따라서 소외계층의 증가, 삶의 양극화 등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운영 모델을 도출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발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과 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적

- 지역 내 인권증진을 위한 비전·목표, 연차별 추진전략 설정을 통해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 시민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문화 형성과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과제 도출

2. 계획의 기간 및 방향

○ 계획기간 : 2014. ~ 2018.(5개년)

○ 계획의 방향

-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수립
- 대전에 맞는 인권 개념과 비전, 목표 설정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구성
-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인권제도 기반구축, 인권가치 및 문화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방안,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대전 인권환경 및 정책평가

- 실태조사 및 용역 등 연구를 통하여 대전 인권환경의 기본 현황을 확보
 - 연구결과에 대한 인권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전의 인권환경 등을 보완하고 필요시 시 시민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시민 설문 등 진행
- 인권과 관련된 기 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인권 관점에서 재분석 및 인권정책위원회 자문을 통해 인권정책의 수준 평가

2) 타 시도 및 해외 인권사례 조사

- 학술 연구자료를 통해 조사하되 타 시도 인권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우리 시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이미 인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을 비교·분석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전시만의 독특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해외 사례의 경우 정책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영
 - 해외 사례는 최초의 인권도시를 선언한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비롯하여 우리와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오사카 사례 등을 검토하여야 실익이 있음
 -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인권정책의 비전·목표 설정에 참조

3) 대전 인권정책 비전과 방향 설정

- 대전의 도시 이미지는 과학도시, 복지만두레 등 민간복지 네트워크, 사회적 자

본도시 등이 있으므로 기존 도시이미지의 연장 선상에서 비전과 방향을 설정

- 인권도시 대전의 비전은 상징적인 선언이나 완결된 이념형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도시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설정하되 인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설정
-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대전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단체장 변동, 정책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비전 설정하고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방향 제시

4) 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 기본조례 이외에 인권정책 대상별 목표와 방향을 담은 분야별 인권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인권헌장 제정하여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
 - 인권의 가치와 실천 방향 등이 시민들에게 더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해 대전 시민인권헌장 제정
-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전담부서, 인권옴부즈맨 제도, 인권정책 위원회와 대전광역시 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 분담과 관계를 설정

5)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 단순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을 넘어 인권 실천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친화적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교육 방안 마련
 -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인권교육 인력풀 양성

- 인권단체, 연구기관 등을 통해 공무원, 시민,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개소 예정이 대전인권사무소와 협력 방안 마련
- 또한, 참여적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각종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문화예술 분야를 활용한 인권교육 방안 개발
- 인권교육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인권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6)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방안 마련

- 인권의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최우선의 중요 과제로 하여야 함
-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방안을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
-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창업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이동권 관련 각종 편의시설 등에 초점
-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안전망구축, 취업지원, 아동의 인권보장 그리고 이주민의 정착 및 취업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부터 대책 마련
-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를 중점으로 하되, 모성, 육아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학대,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비행 문제,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강구
- 노인은 노인학대, 사회참여, 독거 노인의 안전 등에 역점을 두고 인권정책 추진

- 그 외에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방안 모색

7)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실현
-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운영
-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실현을 위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바람직한 사회공동체 구현

8)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시민사회와의 인권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전시의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
 - 인권 관련 수요와 요구는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등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권관련 네트워크 구성
 - 시민참여 인권행정 운영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권가치 공동체로서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지속적 교류를 시행하고 인권침해시 시민 주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
- 현재 지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들과의 소통

과 연대가 전략적으로 중요

- 따라서 인권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방안 강구
- 또한, 정책 목표와 가치에서 유사성이 있는 사회적 자본, 복지만두레, 자원봉사 등의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9) 인권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제시

분 야	주요 과제
시민참여	시민 행정 참여도 제고, 행정정보 공개, 인권관련 시민참여제도 도입, 시민·사회단체 조직 지원, 민주적 리더십(소통) 확보 등
인권문화 조성	시민인권의식 제고, 자원봉사·기부·헌혈 참여율 제고, 인권교육 개발
경제분야	고용률 증진, 실업률 감소 대책, 비정규직 최소화, 부당노동행위 관리, 산업재해 예방, 임금채불 근절 등
문화분야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공공도서관 확충,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등
생활안전	사생활보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장애인 학대 근절, 복지시설 관리, 학교 폭력 예방 등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 노숙자 관리, 도시개발에 따른 이주자 주거권 보호, 개발예정 구역 관리·지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보건환경	법정 전염병 예방, 자살 예방,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5대 질환 사망자 발생률 저감, 취약계층 의료 보호, 노인 의료 정책 등
교통분야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장애 없는 도시환경 조성 등
범죄예방	치안향상, 교통 안전도 확보, 화재 및 자연재해 대책,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등
소수자 보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증대, 외국인 평등 확보,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인식 개선 등

제 5 장

결론

제5장 결론

- 국내외적인 인권담론의 영향으로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
-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인권 실행의 주요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외계층의 증가, 삶의 양극화 등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 즉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인권도시를 구현할 타당성과 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UN 등 국제사회도 종전의 시민적·정치적 인권에서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이나 도시차원의 시민인권 향상과 실천을 도모하고 있으며,
-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일본의 오사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이 인권도시를 선포하고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대전이라는 도시단위에서 인권실천을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도시 지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대전시의 인권도시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대전시는 이미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인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 제도적 여건 및 조직적 여건은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역사문화적 여건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충절의 고장인 대전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대전시민들 또한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이 강하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시민운동 참여의향이 높아 인권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정목표 5가지 중 따듯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 행정은 인권이 지향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소통행정 구현, 나눔·성감·상생의 대전의 복지구현, 사회적 자본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인권도시 구현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적으로도 대전은 2012년 대전광역시 인권도시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인권관련 제도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직적 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부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로파크, 대학의 인권관련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활동하고 있어 인권관련 업무 추진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전의 기존의 도시이미지와 비전 등과 부합할 수 있는 대전의 인권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추진전략은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브랜드 제고,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여야 함
- 인권도시 추진체계로는 인권업무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감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인권 단체 활동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관민 협력 위원

회 결성이나 인권위원회 활성화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구축은 인권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인권제도의 기반은 인권행정 체계 강화 및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을 통한 인권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인권헌장이나 인권조례 등에 근거하여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인권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의 확대,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따라서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인권도시 구현의 배경과 목적, 대전의 인권환경과 정책에 대한 평가, 해외 및 다른 인권도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전 인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인권정책 추진체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함
- 또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방안, 인권 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방안,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참 고 문 헌

- 강희원,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토론회 자료모음(2011-2012)』, 2012.
- 광주발전연구원,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2011.
- 계명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및교육센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다문화사회와 이주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2011년 계명대학교 다문화사회센터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201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글씨미디어, 2011.
-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그리고 도전과 전망』, 위원회 설립 10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2012.
-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2012.
- ,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2012.
- , 『2012 인권통계』, 2013.
- ,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 연구-캐나다경험과 한국적모형 모색-』, 2013.
- 김경찬,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및 아시아인의 인권보장”, 「안암법학」 제39권, 2012.
-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권, 한국법학회, 2011.
- 김재철, 『시민 인권보호를 위한 옴브즈맨 도입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13.
- 김중섭, “지역공동체와 인권”, 「현황과 인식」 제30권 제4호 통권 제100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2006. 겨울.
-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대전광역시, 『대전시 60년 사』, 2009.

- , 『대전통계연보』, 2012.
- , 『2013 대전의 사회지표』, 2013.
- 대전발전연구원·충남대학교 인권센터·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제고 실효화 방안 모색』, 충남대학교-대전발전연구원 인권관련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 2013.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1 한국인권보고서』, 2011.
- 박광섭·김혁,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법무부,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개요』, 2012.
- 서울특별시,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
- 송기춘, “지방자치와 인권보장-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 3호, 국제헌법학회, 2012.
- 송영현, “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안 진,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윤지용, “노인과 부양자가 지각한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충남대학교·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충남대 인권센터·국가인권위원회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 2013.

정책연구보고서 2014-03

대전 인권증진의 비전과 발전방향 연구

발행인 대전발전연구원장

발행일 2014년 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82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287-2)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유선디자인 TEL: 042-632-3007 FAX: 042-632-80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 978-89-98154-89-9